공 개

의안번호	제 183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12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각각 별지1, 2, 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법」 개정('26.3.6 시행)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26.6.30 시행예정)에 따라 정규시장 또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관련 사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개정안 제39조제1항 / 코스닥시장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항 / 코넥스시장 개정안 제14조제1항·제5항 개정)

□ 신탁계약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관련 사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개정안 제35조제6항, 제41조, 제80조제1항 / 코스닥시장 개정안 제12조, 제36조제1항 / 코넥스시장 개정안 제16조, 제54조제1항 개정)

4. 참고사항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지1>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지2>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지3>

<별 지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범위 이내의 가격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제40조제2항제1호 중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3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3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기주식매수(매도)”를 “자기주식매수”로, “자기주식신탁매수(매도)”를 “자기주식신탁매수”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제35조(시간외대량매매) ① - ---------- 해당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	⑤ ---------- 해당 -

도로 한다)과 5%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은 제80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41조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39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를 할 수 없다.	제39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① ----------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 ----------.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 종가

가. 매수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범위 이내의 가격	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보다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	<삭 제>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당해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삭 제>

당해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	2. ----------

하여 승인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① (생략)	제4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1. ---------- 제39조제1항제1호----------
2. 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 제39조제1항제2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0조의 규정은 회원이 제80조의 규	제41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

정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매도)”는 “자기주식신탁매수(매도)”로 본다.	---------- --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 ---------- ----------. ---------- ---------- ---자기주식매수-----자기주식신탁매수-------.
제8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 등) ① 회원은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당해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 등) ① ---------- ---------- ---------- ---------- ---------- ----------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 ---------- ---------- ---------- --- 해당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신탁업자와 금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당해	② ---------- ---------- ---------- ----------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u>당해</u> 주권상장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③ ---------- <u>해당</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 지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을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매거래시간중”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회원은”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를 “매매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제12조제1항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을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의 매수”는 “자기주식의 신탁매수”로 하며, 제11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제36조제1항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를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 ---------- --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 ---------- ---------- ---------- ---------- ------.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나. 매도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종가 이하로 하고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삭 제>

상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삭 제>
② 회원은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가격(그 정정호가를 포함한다)을 제	②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2. ---------- 해당 ----------
⑤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⑤ 회원은 ---------- 매매하여야 하며, -------

매도호가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당일 종가(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의 경우는 전일 종가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가 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회원이 제36조에 따라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① ----------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0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매거래”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로, “자기주식의 매도”는 “자기주식의	② ----------, “자기주식의 매수”는 “자기주식의 신탁매수”----------

신탁매도”로 하며, 제11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 ---------- ---------- -------.
제36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① 회원은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당해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6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① ---------- ----------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 ---------- 해당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 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 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③ ---------- ---------- 해당 ---------- ---------- ----------.

<별 지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을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매거래시간중”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회원은”으로 하며, “할 수 있으며”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제16조제1항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을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4조 중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의 매수”는 “자기주식의 신탁매수”로 하며, 제15조 중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제54조제1항 중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를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 제출등)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규시장의 호가 접수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 제출등) ① ---------- ---------- ----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 ---------- ---------- ---------- ---------- ---------- ------.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매수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나. 매도의 경우 해당 종목	<삭 제>

의 전일종가 이하로 하고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상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가. 매수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삭 제>
② 회원은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에 따른 호가의 가격(그 정정호가를 포함한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⑤ 회원은 ---------- ---------- ----------

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제54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① 회원은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해당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4조(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① ---------- ---------- ---------- --------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1